

화순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0. 4. 20
- 다. 상정일자 : 2000. 5. 1(제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종철

나. 개정사유

- 현행 별정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함.

다. 주요내용

-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요건 구체화(안 제7조)
 -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할 수 있으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준하여 인정되는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안 제8조 제1항 단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써,
-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별정직의 특성을 유지도록하고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용 재량을 넓혀 주는 효과가양
- 상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지방법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4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갇이하는 별정직 비서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현행 별정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별정직 공무원의 진보 요건 구체화 (안 제7조)
 - 단위기관 내에서 진보할 수 있으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진보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갇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적 공무원의 정년과 준하여 인정되는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안 제8조 제1항 단서)

3. 관련근거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전남 총무 12100-2068, '99. 11. 20)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성(안)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보) - - - - - - - - - -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 보 - - - - - - - - -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 - - - - - - - -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